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

7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중소형 소매점 보호를 위해 대형 소매점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해 왔으나 90년대부터 규제를 점차 완화

규제완화 이후 중소형 소매점의 점포수는 크게 줄었으나 꾸준한 서비스개선 노력에 힘입어 점포당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경쟁력을 확보. 반면 대형 소매점은 과다한 교통정체 유발 비용, 소음방지비용 등의 부담으로 교외지역으로 진출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형 소매점에 대한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 중소형 소매점의 상권을 위협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소형 소매점의 경쟁력 강화, 유통업의 고용증가,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

1. 대형 소매점에 대한 규제 변화

(대점법*을 통해 대형 소매점 출점을 강력히 규제 : 1974년~2000년)

* 정식 법률명은 「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며 중소소매상의 사업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형소매점의 영업행태를 출점 전 심사·규제

○ 대점법을 근거로 대형 소매점 출점 등을 규제

— 일본정부는 비중이 높은* 중소형 소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 대점법을 제정하여 대형 소매점(500㎡ 이상)의 매장 면적, 영업일수, 폐점 시간 등을 사전심사하는 형태로 규제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중소형 소매점(재래점포+편의점)의 매출비중은 일본(56%, 1997년)이 미국(29%, 1995년)보다 크게 높으며 한국(58%, 한국은행 분석, 2001년)과는 비슷한 수준

- 1990년 이후에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과 미국 등 주요국의 이의제기 등을 배경으로 기존법의 테두리안에서 규제를 서서히 완화
 - 폐점시간 완화 : 19시(90년) → 20시(94년), 연간휴업일수 조정 : 44일(92년) → 24일(94년), 적용대상면적 확대 : 500m²(79년) → 1,000m²(94년)

(출점규제 폐지, 대점입지법을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 : 2000년 이후)

- 기존 대점법은 외국 소매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비관세장벽으로 지목받아 미국에 의해 WTO에 제소(1997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유통산업 선진화를 저해하고 중소형 소매점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면서 폐지
 - 2000년 5월 대점법을 폐지(2001년 1월 효력 정지)하고 대신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 (2000년 6월, 이하 대점입지법)을 시행
 - 대형 소매점을 직접 규제하여 중소소매업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중소소매업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소매점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전체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
 - 대형소매점(1,000m² 이상)들은 출점이나 영업일에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교통정체 유발 억제, 소음 방지,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지자체의 권고를 이행

대점법과 대점입지법의 비교

| | 대점법 | 대점입지법 |
|------|---|---------------------------------|
| 목적 | 중소소매업 보호 |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유지 |
| 규제대상 | 74년: 1,500m ² (정령지정도시 ¹⁾ 3,000m ² 79년 개정: 500m ² 이상 92년 개정 : 1,000m ² 이상 | 1,000m ² 이상 |
| 규제항목 | 소매점면적, 개점일자, 폐점시간, 영업일수 | 교통정체, 교통안전문제, 주차문제, 소음문제, 폐기물문제 |
| 규제방법 | 사전심사, 강제성 | 공청회 후 지자체 권고, 권고의 법적 구속력 없음 |

주: 1) 지방자치법에 의해 정령에서 지정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자료: 일본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에 관한 연구, 손일선(1998)

- 한편 지자체가 대형 소매점과 중소형 소매점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근거법인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 (1959년 제정, 이하 상조법)은 유지되었으나 실제 조정 건수는 미미

* 국내 SSM(super super-market)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8월부터 유사한 제도가 시행중.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일본의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 참조

(대형 소매점의 교외집중을 막기 위한 출점규제 신설 : 2007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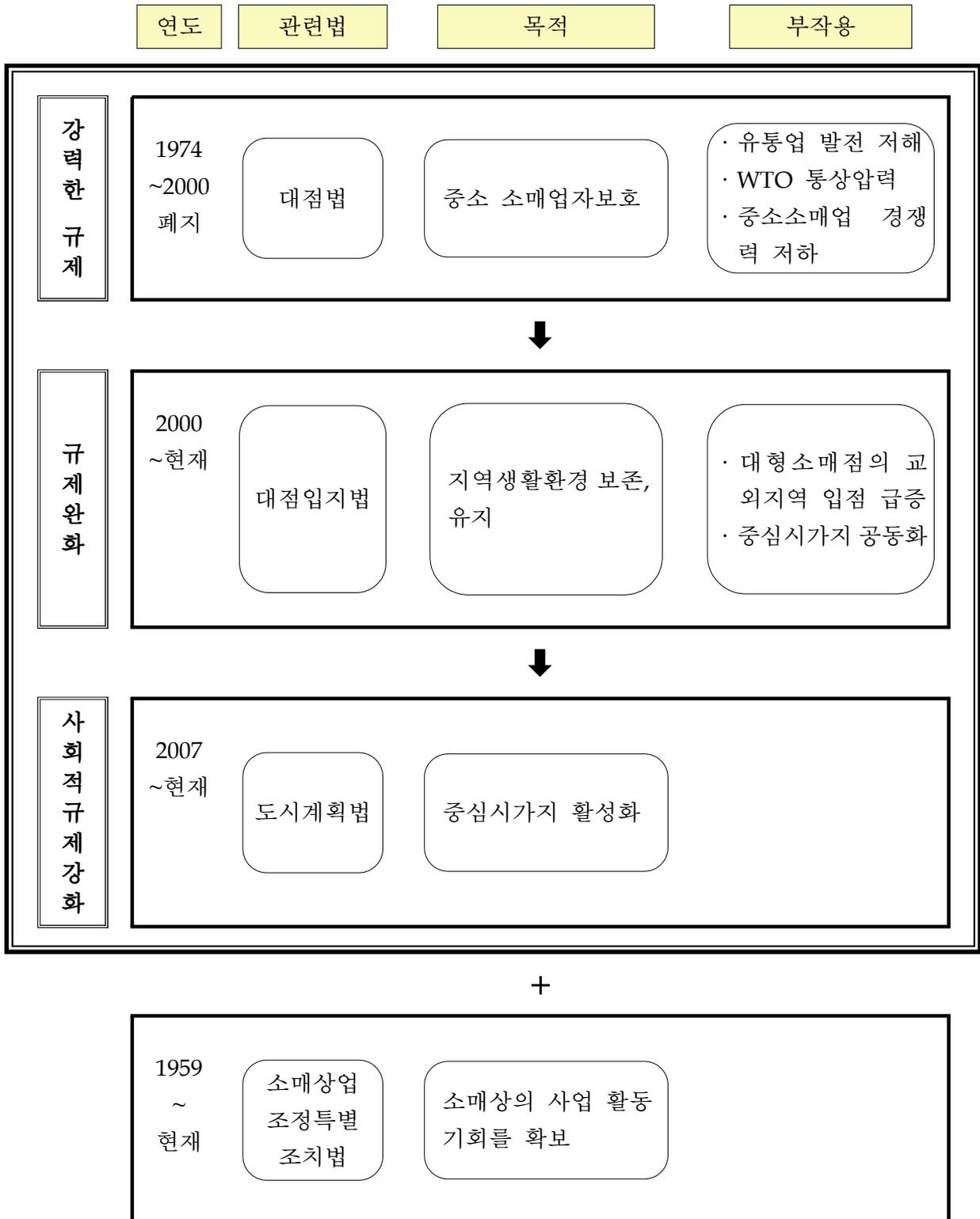
- 2000년 들어 대형소매점들이 중심시가지에서 교외지역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중심시가지 공동화 문제가 발생
 - 대점입지법으로 도심내 대형 소매점의 유지·운영 비용이 크게 늘어나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으로 이전
- 이에 따라 2007년 기존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대형소매점의 교외지역 입점을 규제함으로써 직접적인 출점규제정책을 다시 도입
 - 중심시가지 쇠퇴를 막기 위해 대점입지법을 도시계획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과 연계해 활용*
 - * 3법을 합하여 마지즈꾸리(마을만들기) 3법으로 지칭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 내역

| | | 개정전 | 개정후 |
|--------|--------------------|------|------|
| 시가화구역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 허가 | 허가 |
| | 준공업지역 | 허가 | 일부허가 |
| | 제2종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 | 허가 | 금지 |
| 비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일부허가 | 금지 |
| | 구역구분미정지역 | 허가 | 금지 |
| | 농지 | 허가 | 금지 |

<참고>

일본 대형 소매점 입점 관련 규제 변천



2. 제도변화 이후 각 주체별 대응

(중소형 소매점의 업종형태*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노력)

* 일본 소매점의 세부 분류는 <참고2> 일본 소매점 업종형태 분류 참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SSM은 일본의 전문슈퍼와 성격이 유사. 다만 현재 중소기업청은 SSM을 매장면적 1,000~3,000m²로 정의하고 있으나 개정이 진행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상에서는 SSM 규제대상을 매장면적이 아니라 대기업 직영 여부로 정의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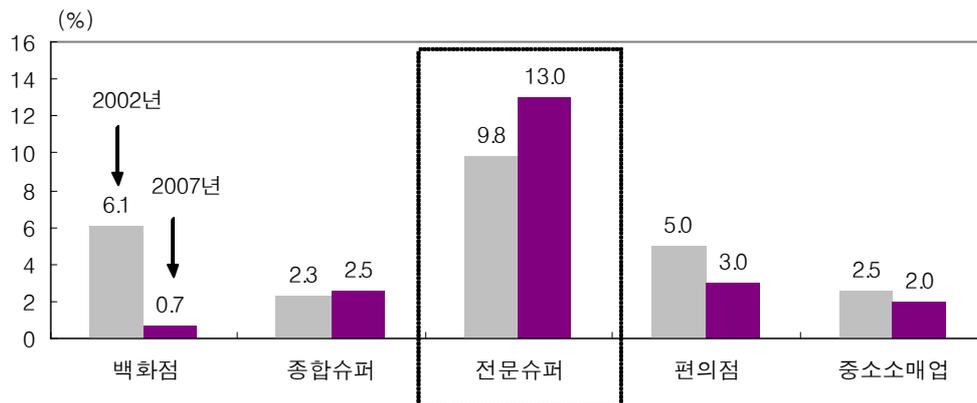
□ 1990년 대점법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대형 소매점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소형 소매점의 업종형태전환, 서비스 질 향상 노력 등이 가속적으로 진행

① 규모의 확장(하드웨어 부문)

○ 일부 전문슈퍼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형 소매점들은 자발적 체인화 (voluntary chain)* 등을 통해 전문슈퍼 규모로 발전

* 다수의 독립 사업자가 하나의 점포로 제휴하여 상표 사용·구매·물류 등을 공동으로 행함으로써 거래의 대형화와 매입 단가의 인하를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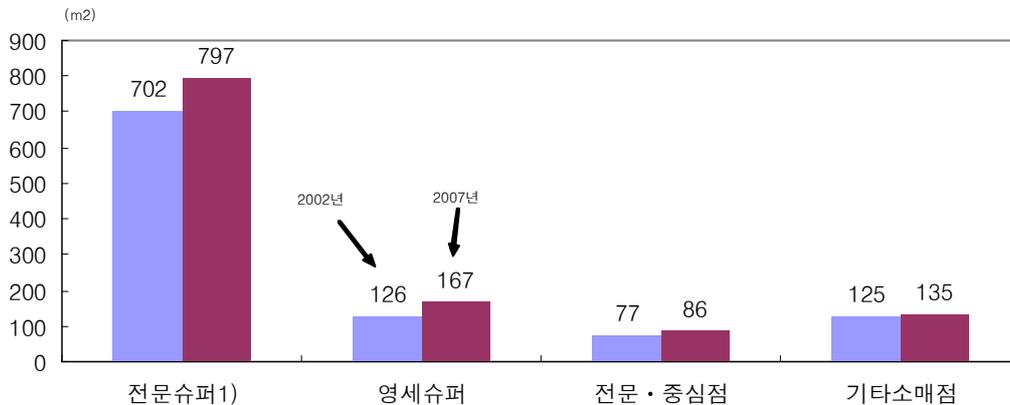
소매점 업종형태별 자발적 체인점 비율 추이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 이와 함께 개별 소매점들도 매장을 확장함으로써 중소형 소매점의 면적이 증가

중소형 소매점 점포당 면적 추이



주 : 1) 종업원 50인 미만인 전문슈퍼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② 서비스 경쟁력 강화(소프트웨어 부문)

○ 중소형 소매점들은 경영합리화, 서비스 특화 등으로 경쟁력을 보완

- ▷ 상가간 연합 : 인구 47만명의 마츠야마 시에는 4개의 상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였으나 각 상가들은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상가 전체를 공동 운영·관리하기로 합의(마츠야마 오카이도우 상가)
- ▷ 조합이 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 : 조합이 중심이 되어 상가내 입주업종 등을 조정하는 한편, 상가 이미지 통일을 위해 간판 등의 디자인 코드를 정하여 설치 위치, 높이 등을 제한(카나자와시 겐마치 상가)
- ▷ 지역사회와 연대강화 : 지역 NGO 및 학생 단체 등과 제휴하여 지역사회와 관계 강화(마츠야마 오카이도우 상가)
- ▷ 개성있는 프로젝트 개발 : '一店逸品 운동'을 통해 각 소매점이 자기만의 경쟁력 있고 독특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을 유치(아오모리시 신마치 상가)

▷ 이벤트 개설 : 새로운 플라자를 개설하여 지역연고 축구팀과 연계된 스포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연고팀이 승리한 날에 다양한 이벤트 진행(코우후시 코후 상가)

○ 일본정부가 중심시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사업*,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등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 상공회의소, 행정당국, 시민,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파트너십을 이루어 구성되는 조직으로 중심시가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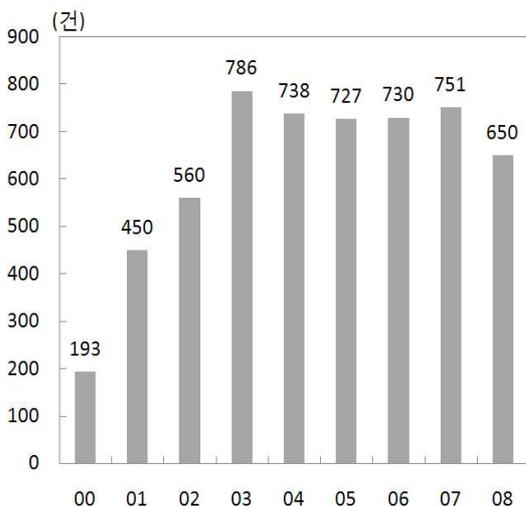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참고3> 일본정부의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 참조

(대형 소매점들은 교외로 진출)

□ 대점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형 소매점들의 출점이 크게 늘어났으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입점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도시보다는 교외지역을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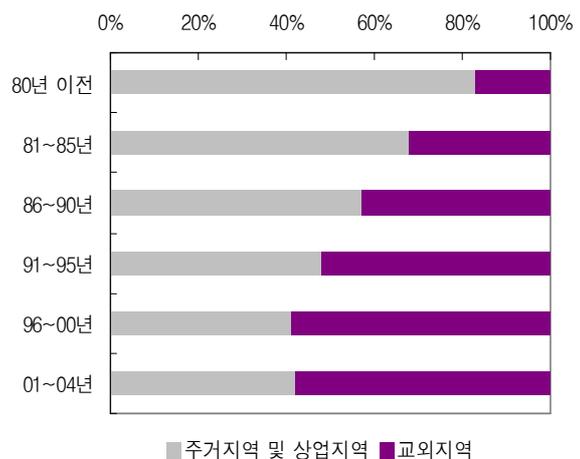
○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대형 소매점 출점이 감소한 반면 공업지역, 구역 구분 미정 지역 등 교외지역 출점 비율이 증가

대형소매점(1,000㎡ 이상) 신설 신고 건수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대형 소매점(10,000㎡ 이상) 개점 상황



주 : 교외지역은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구역구분 미정지역 포함

자료: 미즈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3. 영향

(중소형 소매점 수는 줄었으나 매출은 개선)

① 중소형 소매점 수의 급감

- 1999~2007년중 중소형 소매점 수는 편의점 등이 증가(1.7만개)했으나 재래소매점이 급격히 감소(28.6만개)하면서 전체적으로 27만개 정도 감소
- 반면 대형소매점은 중심시가지 공동화로 백화점이 감소(123개)하고 대형마트가 경쟁과다 등으로 감소(85개)하였으나 대형 전문슈퍼가 증가(2,203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000여개 늘어남

업종형태별 소매점 수 추이

| | 1999(A) | 2002 | 2007(B) | (개, %) 증감 ¹⁾ (B-A) |
|------------------------|------------------|------------------|------------------|----------------------------------|
| 소매업전체 | 1,406,884 | 1,300,057 | 1,137,859 | -269,025 (-19.1) |
| 백화점 | 394 | 362 | 271 | -123 (-31.2) |
| 대형마트 | 1,670 | 1,668 | 1,585 | -85 (-5.1) |
| 전문(대형)슈퍼 ²⁾ | 6,102 | 7,277 | 8,333 | 2,231 (36.6) |
| 대형계 | 8,166 | 9,307 | 10,189 | 2,023 (24.8) |
| 전문(중형)슈퍼 ²⁾ | 29,429 | 29,758 | 27,179 | -2,250 (-7.6) |
| 편의점 ³⁾ | 39,628 | 56,434 | 56,385 | 16,757 (42.3) |
| 재래소매점 ⁴⁾ | 1,329,661 | 1,204,558 | 1,044,106 | -285,555 (-21.5) |
| 중소형계 | 1,398,718 | 1,290,750 | 1,127,670 | -271,048 (-19.4) |

주 : 1) 1999년대비 2007년의 증감, ()안은 동 기간중 증가율
 2) 전문슈퍼를 종업원 50인 기준으로 대형과 중형으로 구분 3) 약국 포함
 4) 영세슈퍼, 전문점, 중심점, 그외 소매점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② 중소형 소매점의 점포당 매출액 증가

- 대점법 폐지 직전인 1999년 중소형 소매점의 점포당 매출액은 7,750만 엔이었으나 2007년에는 9,399만엔으로 증가
- 규모확장, 서비스 개선 등으로 중소형 소매점들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
- 반면 대형 소매점은 마트와 전문슈퍼중심으로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

소매 업종형태별 점포당 연간 매출액 추이

| | 1999(A) | 2002 | 2007(B) | (만엔, %) 증감 ¹⁾ (B-A) |
|------------------------|----------------|----------------|----------------|-----------------------------------|
| 소매업전체 | 10,223 | 10,393 | 11,839 | 1,616 (15.8) |
| 백화점 | 2,463,315 | 2,327,870 | 2,844,564 | 381,249 (15.5) |
| 대형마트 | 529,920 | 510,499 | 469,826 | -60,094 (-11.3) |
| 전문(대형)슈퍼 ²⁾ | 176,265 | 164,230 | 162,680 | -13,585 (-7.7) |
| 대형계 | 358,937 | 310,444 | 281,791 | -77,146 (-21.5) |
| 전문(중형)슈퍼 ²⁾ | 44,085 | 39,248 | 37,676 | -6,409 (-14.5) |
| 편의점 ³⁾ | 15,481 | 16,318 | 17,770 | 2,289 (14.8) |
| 재래소매점 ⁴⁾ | 7,176 | 7,084 | 8,211 | 1,035 (14.4) |
| 중소형계 | 7,750 | 8,229 | 9,399 | 1,649 (21.3) |

주 : 1) 1999년대비 2007년의 증감, ()안은 동 기간중 증가율
 2) 전문슈퍼를 종업원 50인 기준으로 대형과 중형으로 구분 3) 약국 포함
 4) 영세슈퍼, 전문점, 중심점, 그외 소매점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유통업 전체의 고용은 증가)

- 1997년 이후 중소형 소매점 종사자는 편의점 종사자 증가(37.0만명)에도 불구하고 재래 소매점 종사자수가 크게 줄어들면서(58.5만명) 전체적으로는 감소(26.1만명)
- 반면 대형 소매점은 백화점이 감소(7.0만명)하였으나 대형마트(7.5만명)와 전문슈퍼(48.4만명)의 고용이 크게 증가

→ 전체 소매업 고용은 23만명 증가

소매 업종형태별 종사자수 추이

| | 1997(A) | 2002 | 2007(B) | (천명, %) 증감 ¹⁾ (B-A) |
|------------------------|--------------|--------------|--------------|-----------------------------------|
| 소매업전체 | 7,351 | 7,973 | 7,579 | 228 (3.1) |
| 백화점 | 187 | 144 | 117 | -70 (-37.4) |
| 대형마트 | 303 | 380 | 378 | 75 (24.8) |
| 전문(대형)슈퍼 ²⁾ | 245 | 606 | 729 | 484 (197.6) |
| 대형계 | 735 | 1,130 | 1,224 | 489 (66.5) |
| 전문(중형)슈퍼 ²⁾ | 523 | 528 | 477 | -46 (-8.8) |
| 편의점 ³⁾ | 406 | 710 | 776 | 370 (91.1) |
| 재래소매점 ⁴⁾ | 5,687 | 5,605 | 5,102 | -585 (-10.3) |
| 중소형계 | 6,616 | 6,843 | 6,355 | -261 (-3.9) |

주 : 1) 1997년대비 2007년의 증감, ()안은 동 기간중 증가율
 2) 전문슈퍼를 종업원 50인 기준으로 대형과 중형으로 구분 3) 약국 포함
 4) 영세슈퍼, 전문점, 중심점, 그외 소매점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중심시가지 공동화 현상 심화)

□ 대형소매점의 교외진출 증가는 중심시가지의 상권침체를 유발

- 일본 총무성의 2004년 연구결과 1997년~2003년중 121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중심시가지의 인구, 상점수, 연간상품 판매액수, 사업체 수 등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중심시가지 공동화 현황
(1997~ 2003년 중)

| | 감소지자체(개) | 비중(%) |
|----------|----------|-------|
| 인구 | 84 | 69.4 |
| 상점수 | 111 | 91.7 |
| 연간상품 판매액 | 113 | 93.3 |
| 사업체수 | 112 | 92.5 |
| 사업체 종업원수 | 100 | 82.6 |

자료 : 일본 총무성

중심시가지 상점가 공실률 추이

| | 공실률(%) |
|-------|--------|
| 1995년 | 6.87 |
| 2003년 | 7.31 |
| 2006년 | 8.98 |

자료 : 일본 전국 상가진흥조합 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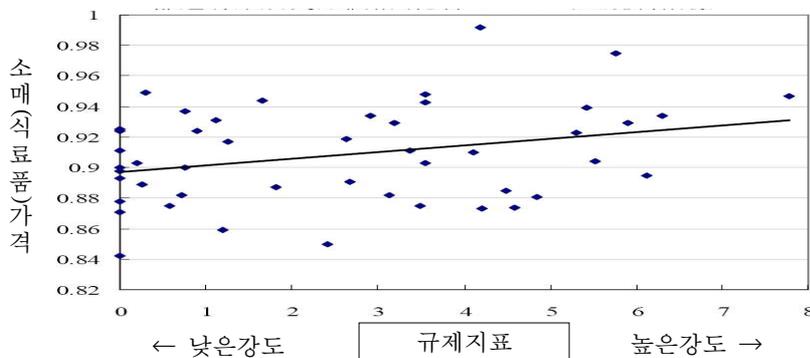
(소비자 후생은 증가)

□ 경쟁 심화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후생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소매업에 있어서의 경쟁과 소비자 후생 계측,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연구센터(2009. 6.)

- 대형 소매점 규제 강도가 낮을수록 전체적인 평균 소매가격(식료품)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대형 소매점 행정규제¹⁾와 평균 소매가격



주 : 1) 대점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형점포 규제항목을 취합하여 규제정도를 지표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연구센터

4. 시사점

-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형 소매점에 대한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 중소형 소매점의 상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소형 소매점의 다양한 생존전략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전체 유통업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자효용도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최근 일본중소상인들의 주된 관심사도 대형소매점으로부터의 위협보다는 상권의 매력 감소나 상점가의 협력 강화 등에 맞추어지는 추세

일본 상점가¹⁾의 문제(중소상인들의 앙케이트 조사)

| | 제 1 요인 | 제 2 요인 | 제 3 요인 |
|-------|-----------------------|-----------------------|---------------------------|
| 1995년 | 대형 소매점으로 고객 유출 | 후계자 문제 | 대형소매점 출점에 따른 사기 하락 |
| 2000년 | 상점가 매력 저하 | 대형 소매점으로 고객 유출 | 상점가 협동 의지 낮음 |
| 2003년 | 후계자 문제 | 상점가 매력 저하 | 상점가 협동 의지 낮음 |
| 2006년 | 상점가 매력 저하 | 상점가 협동 의지 낮음 | 후계자 문제 |

주 : 1) 전국 주요 8,000개 상점가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

자료 : 일본 전국 상가진흥조합 연합회

<참고1>

일본의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

- 대점법 폐지 이후에는 중소형 소매점과 대형 소매점과의 조정을 도모하는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1959년 제정, 이하 상조법)이 유일하게 대형 소매점 출점을 견제
 - 상조법은 ‘소매상의 사업 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소 소매상 단체는 대기업의 사업 개시 혹은 확대에 경영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도도부현 지사에 조사를 신청
 - 도도부현 지사는 중소 소매상 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권고(출점 계획 연기, 규모 축소 등) 및 조정 명령(권고에 따르도록 대기업에 명령, 위반시 300만엔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음
 - 상조법으로 출점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으나 대기업은 이미지 저하를 우려해 조사가 실시되면 출점 계획을 포기하거나 변경
 - 동 법으로 9건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있으나 실제 조정이 이루어진 적은 없음

상조법에 따른 조사 신청 사례

| 연도 | 지역 | 사례 | 연도 | 지역 | 사례 |
|-------|------------|------|-------|-----------|------|
| 1978년 | 군마현(群馬県) | 대형슈퍼 | 1979년 | 아이치현(愛知県) | 대형슈퍼 |
| 1978년 | 토쿠시마현(徳島県) | 대형슈퍼 | 1981년 | 아이치현(愛知県) | 대형슈퍼 |
| 1978년 | 도쿄도(東京都) | 대형서점 | 2005년 | 도쿄도(東京都) | 대형서점 |
| 1979년 | 군마현(群馬県) | 대형슈퍼 | 2005년 | 오사카부(大阪府) | 대형슈퍼 |
| 1979년 | 아이치현(愛知県) | 대형슈퍼 | | | |

자료: 시장경영지원센터

<참고2>

일본 소매점 업종형태 분류

□ 일본 소매점 분류는 관련 법령, 행정기관 등에 따라 다소 차이

○ 대점법 및 현행 대점입지법에서는 1,000m²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대형, 그 미만이면 중소형으로 구분

— 중소형 소매점 보호를 위해 1952년 제정된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에서는 고용인원 50인 이상은 대형, 그 미만은 중소형으로 구분

○ 경제산업성은 판매방식, 취급상품, 매장면적으로 소매업체를 세분화하여 통계를 발표

— 경제산업성 분류를 대점입지법과 상조법 기준으로 구분하면 백화점, 종합슈퍼, 종업원 50인 이상 전문슈퍼는 **대형 소매점**으로

종업원 50인 미만 전문슈퍼, 전문점, 중심점, 그외 소매점, 편의점, 약국 등은 **중소형 소매점**으로 분류 가능

일본 경제산업성 기준 소매업 업종형태별 구분

| 분 류 ¹⁾ | 구 분 | 판매 방식 | 취급 상품 | 매장 면적 |
|-------------------|---------|-------|---|--|
| 대형 소매점 | 백화점 | 직원판매 | 각종 상품 | 3000m ² 이상 대형 3000m ² 미만 중형 |
| | 종합슈퍼 | 셀프 | 각종 상품 | 3000m ² 이상 대형 3000m ² 미만 중형 |
| 중소형 소매점 | 전문슈퍼 | 셀프 | 주요품목(70% 이상) 에 따라 식료품, 의류, 주거형으로 구분 | 250m ² 이상 |
| | 영세슈퍼 | 셀프 | 각종 상품 | 대체로 250m ² 미만 |
| | 전문점 | 직원판매 | 주요품목(90% 이상) 에 따라 식료품, 의류, 주거형으로 구분 | |
| | 중심점 | | 주요품목(50% 이상) 에 따라 식료품, 의류, 주거형으로 구분 | |
| | 그 외 소매점 | | 각종 상품 | |
| | 편의점 | 셀프 | 각종 상품 | 30m ² 이상 250m ² 미만 |
| | 약국 | 셀프 | 의약품 | |

주 : 1) 전문슈퍼의 경우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 분류 기준에 따라 종업원 50인 이상은 대형, 미만은 중소형으로 구분

<참고3>

일본정부의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

| 목적 | 지원책 | 소관부서 |
|----------------------------|--|---|
| 고객흡인력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시가지 상점가 등에 리노베이션 보조금 지급 ■ 정책은행을 통한 출자 및 융자 ■ 도시재생 종합정비사업 ■ 가로/마을만들기 종합지원사업 ■ 교통터미널 등과 일체로 정비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융자 ■ 차세대 관광정보기반 정비사업 ■ 지역활력 창출 사업/전문소매 활성화 사업 ■ 고향만들기 사업 ■ 중심시가지 전기통신시스템 정비사업 ■ 지역문화재·역사적 유산 활용에 의한 지역 일시키기 사업 ■ 도매매장 시설정비사업 ■ 생산자와 지역 식품판매업자의 제휴에 의한 지역특산식품 이용촉진 사업 ■ 사회체육시설 정비 보조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정비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 인재확보 및 육성 지원 | <p>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총무성 농림수산업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p> |
| 주변환경 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에게 편안한 가로/마을 만들기 사업 ■ 자전거 주차장 정비사업 ■ 쾌적한 하천공간 정비 ■ 중심시가지 광장공원 정비촉진 사업 ■ 장애자와 고령자에 안락한 가로/마을 만들기 | <p>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p> |
| 교통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도로 및 환상도로 정비사업 ■ 교통터미널 정비/철도역 종합개선 사업 ■ 옴니버스 타운 정비 ■ 버스 이용 촉진 등 종합대책사업 추진 | <p>국토교통성</p> |
| 거주 인구 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우량임대주택 공급촉진 사업 ■ 지역활성화 분양 주택 ■ 주택시가지 정비 종합지원사업 | <p>국토교통성</p> |
| 지역인재 육성 및 주민참여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wn Manager 양성 파견사업 ■ 주민 등의 가로/마을 만들기 활동 지원 ■ 중심시가지 재활성화 대책 경영 개선사업 | <p>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총무성</p> |